|  |  |  |
| --- | --- | --- |
|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5]126호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각 보험감독관리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상무회의 취지에 근거하여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보감위의 통지>(재세[2015]56호)의 관련 요구에 따라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1. 시범지역에 관한 문제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추진지역은 다음과 같다.(1) 베이징(北京)시, 상하이(上海)시, 톈진(天津)시, 충칭(重慶)시.(2)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내몽고(內蒙古)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랴오닝(遼寧)성 선양(沈陽)시,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헤이룽쟝(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장수(江西)성 수저우(蘇州)시,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궁이(巩義)시 포함), 허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후난(湖南)성 주저우(株州)시,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난닝(南寧)시,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 윈난(雲南)성 취징(曲靖)시, 시장(西藏)자치구 라사(拉萨)시,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시, 닝샤(寧夏)회족자치구 인촨(銀川)시(산하 현(縣) 제외), 신장(新疆)위그루자치구 쿠얼러(庫爾樂)시.2. 상업건강보험상품 규율 및 관리에 관한 몇가지 문제재세[2015]56호 문건에서 언급한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건강보험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 및 시범약관(첨부)에 따라 개발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강보험상품을 지칭한다.(1) 건강보험상품은 보장 기능을 구비하고 최저수익보장계좌를 개설하는 유니버셜보험 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의료보험 및 개인계좌 적립 등 두가지 책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는 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관리 및 유지를 책임진다. (2) 피보험자가 만16세 이상, 법정 퇴직연령 미만인 납세자 계층이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사유로 보험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 갱신을 보증하여야 한다.(3) 의료보험 보장책임의 범위는 피보험자 의료보험 소재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내의 자기부담비용 및 일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밖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비용의 정산범위, 비율 및 금액한도는 각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확정한다.(4) 동일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상황별로 상이한 보험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금액 하한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다.(5) 검강보험상품은 '원금유지•박리(薄利)'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 의료보험 부분에 대한 간이보험급부율이 규정비율 미만인 경우 보험회사는 실제 보험급부율과 소정비율의 차액 부분을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로 환불하여야 한다.목표대상의 기존 보장항목•보장수요별로 세가지 유형의 규정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이 있으며 각각 다음 세개의 대상그룹에 적용한다. ①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하고 남은 의료비 개인부담분을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 ②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하고 남은 개인부담분 특정 거액 의료비를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 ③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보험회사는 <보험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상품을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해야 한다.3.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징수관리에 관한 문제시범지역 내 개인의 규정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 가입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2,400위안/년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세전공제하며 상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1) 임금•급여소득 또는 연속적 용역보수를 취하는 개인이 규정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시에 보험증서 증빙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업체는 해당 개인이 보험증서 증빙을 제공한 익월부터 200위안/월의 기준한도 내에서 월단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에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익년 또는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2) 업체가 통일적으로 직원을 위하여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거나 업체와 개인의 공동부담으로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실명으로 개인의 임금•급여 명세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이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한 익월부터 200위안/월의 기준한도 내에서 월단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에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익년 또는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3) 자영업자, 기업체•사업체 도급•임차 경영자, 개인독자기업 및 합명기업의 투자자가 조건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2,400위안/년의 기준한도 내에서 실비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에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익년 또는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개인소득세 정책 징수관리 협력에 관한 문제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정책은 여러 업무단계 및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바 시범지역의 제반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하여야 한다.(1) 재정•세무부서는 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해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2) 보험회사는 상업건강보험상품 판매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에게 영수증 및 보험증서 증빙을 발행하여야 하고 상품명칭 및 납부금액 등 정보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개인소득세 세전공제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상업건강보험 정보 플랫폼과 실시간 연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3) 원천징수의무업체는 개인소득세를 원천공제•납부함에 있어 이 통지와 세무기관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 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하여야 한다.(4) 보험회사 또는 상업건강보험 정보 플랫폼은 개인의 건강보험 구매 관련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이 실시하는 납세자 세전공제에 대한 진실성 대비분석에 협조하여야 하며 일부 납세자의 조세특혜 정책 남용으로 세금이 유실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5.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납세자는 이 통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전공제 정책을 적용받는다.첨부 :1.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2.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A유형 시범약관3.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B유형 시범약관4.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C유형 시범약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5년 11월 27일첨부문서 다운로드 받기 :첨부 1 :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doc<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4895065.doc> 첨부 2 :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A유형 시범약관.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042292.doc> 첨부 3 :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B유형 시범약관.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208557.doc> 첨부 4 :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C유형 시범약관.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361087.doc>  |  |  **关于实施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试点的通知**财税〔2015〕126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地方税务局，各保监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国务院常务会议精神，按照《财政部、国家税务总局、保监会关于开展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试点工作的通知》（财税〔2015〕56号）有关要求，现将实施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试点工作的有关事项通知如下：一、关于试点地区问题　　实施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的试点地区为：　　（一）北京市、上海市、天津市、重庆市。　　（二）河北省石家庄市、山西省太原市、内蒙古自治区呼和浩特市、辽宁省沈阳市、吉林省长春市、黑龙江省哈尔滨市、江苏省苏州市、浙江省宁波市、安徽省芜湖市、福建省福州市、江西省南昌市、山东省青岛市、河南省郑州市（含巩义市）、湖北省武汉市、湖南省株洲市、广东省广州市、广西壮族自治区南宁市、海南省海口市、四川省成都市、贵州省贵阳市、云南省曲靖市、西藏自治区拉萨市、陕西省宝鸡市、甘肃省兰州市、青海省西宁市、宁夏回族自治区银川市（不含所辖县）、新疆维吾尔自治区库尔勒市。 　 二、关于商业健康保险产品规范及若干管理问题　　财税〔2015〕56号文件所称符合规定的商业健康保险，是指保险公司参照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产品指引框架及示范条款（附件）开发的、符合下列条件的健康保险产品：　　（一）健康保险产品采取具有保障功能并设立有最低保证收益账户的万能险方式，包含医疗保险和个人账户积累两项责任。被保险人个人账户由其所投保的保险公司负责管理维护。　　（二）被保险人为16周岁以上、未满法定退休年龄的纳税人群。保险公司不得因被保险人既往病史拒保，并保证续保。　　（三）医疗保险保障责任范围包括被保险人医保所在地基本医疗保险基金支付范围内的自付费用及部分基本医疗保险基金支付范围外的费用，费用的报销范围、比例和额度由各保险公司根据具体产品特点自行确定。　　（四）同一款健康保险产品，可依据被保险人的不同情况，设置不同的保险金额，具体保险金额下限由保监会规定。　　（五）健康保险产品坚持“保本微利”原则，对医疗保险部分的简单赔付率低于规定比例的，保险公司要将实际赔付率与规定比例之间的差额部分返还到被保险人的个人账户。　　根据目标人群已有保障项目和保障需求的不同，符合规定的健康保险产品共有三类，分别适用于：1.对公费医疗或基本医疗保险报销后个人负担的医疗费用有报销意愿的人群；2.对公费医疗或基本医疗保险报销后个人负担的特定大额医疗费用有报销意愿的人群；3.未参加公费医疗或基本医疗保险，对个人负担的医疗费用有报销意愿的人群。　　符合上述条件的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产品，保险公司应按《保险法》规定程序上报保监会审批。 　　三、关于个人所得税税前扣除征管问题　　 对试点地区个人购买符合规定的健康保险产品的支出，按照2400元/年的限额标准在个人所得税前予以扣除，具体规定如下：　　（一）取得工资薪金所得或连续性劳务报酬所得的个人，自行购买符合规定的健康保险产品的，应当及时向代扣代缴单位提供保单凭证。扣缴单位自个人提交保单凭证的次月起，在不超过200元/月的标准内按月扣除。一年内保费金额超过2400元的部分，不得税前扣除。次年或以后年度续保时，按上述规定执行。 　　（二）单位统一组织为员工购买或者单位和个人共同负担购买符合规定的健康保险产品，单位负担部分应当实名计入个人工资薪金明细清单，视同个人购买，并自购买产品次月起，在不超过200元/月的标准内按月扣除。一年内保费金额超过2400元的部分，不得税前扣除。次年或以后年度续保时，按上述规定执行。　　（三）个体工商户业主、企事业单位承包承租经营者、个人独资和合伙企业投资者自行购买符合条件的健康保险产品的，在不超过2400元/年的标准内据实扣除。一年内保费金额超过2400元的部分，不得税前扣除。次年或以后年度续保时，按上述规定执行。 　　四、关于个人所得税政策征管协作问题　　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税前扣除政策涉及环节和部门多，试点地区各相关部门应各司其职、密切配合，切实落实好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　　（一）财政、税务部门要做好健康保险个人所得税优惠政策宣传解释，优化纳税服务。　　（二）保险公司在销售商业健康保险产品时，要为购买健康保险的个人开具发票和保单凭证，载明产品名称及缴费金额等信息，作为个人税前扣除的凭据。保险公司要与商业健康保险信息平台保持实时对接，保证信息真实准确。　　（三）扣缴单位应按照本通知及税务机关有关要求，在代扣代缴个人所得税时认真落实商业健康保险税前扣除政策。　　（四）保险公司或商业健康保险信息平台应向税务机关提供个人购买健康保险的相关信息，配合税务机关对纳税人税前扣除的真实性进行比对分析，防止部分纳税人滥用税收优惠政策，造成税款流失。 　　五、本通知自2016年1月1日执行。凡购买符合条件健康保险产品的纳税人，应按本通知规定程序享受税前扣除政策。 　　附件：1.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产品指引框架　　　 2.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A款示范条款　　　 3.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B款示范条款　　　　4.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C款示范条款 财政部国家税务总局保监会2015年11月27日附件下载:附件1：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产品指引框架.doc<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4895065.doc> 附件2：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A款示范条款.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042292.doc> 附件3：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B款示范条款.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208557.doc> 附件4：个人税收优惠型健康保险（万能型）C款示范条款.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361087.doc>  |